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2025. 10.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5-122
- 나. 제안자: 차해영 의원 외 7인
- 다. 제안일자: 2025년 10월 13일(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10월 14일(화)

2. 제안사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방향 설정 등 자문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 명확화 규정(안 제3조)
-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11조)
-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의2)

4. 관계법령

-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나. 「소득세법」 제168조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5. 검토보고

가. 개정 조례안 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의 목적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체계성·전문성·지속성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현재 마포구는 소상공인 단체 지원, 저금리 융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 자문 및 정책 심의 기구의 부재로 인해 사업 간 조정 및 중복 방지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단기적 지원사업 중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과 체계적 정책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심의·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정책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할 제도적 기구로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아울러, 강남구·성동구·은평구 등 서울시 내 20개 자치구가 이미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마포구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 상위법령인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명시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창업예정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유지함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 -----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 -----. ----- -----.

(2)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제11조)

-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위원회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기능으로 병행 운영 중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u></p> <p>① <u>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u></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수행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

(3)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의2)

- 법령 인용 시 띄어쓰기 및 표기법을 통일하고, 인용 조항의 정확성을 보완함.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상공인기본법</u>」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소상공인기본법</u>」 제3조-----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 -----.</p>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 4. (생략)

제8조의2(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마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3. (생략)

1. -----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

-----.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3. (현행과 같음)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심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입법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특히,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상위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기구는 아니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한 자문기구로서의 설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정책 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됨.
- 다만, 기금운용심의회가 위원회 기능을 병행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와 함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